

2019년 8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물복지정책팀 팀장 김동현(044-201-2371), 사무관 박종현(2377) / 제공일 : 8월 14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「동물보호법」 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

《주요내용》

◇ 반려동물 관련 영업*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, 반려동물 및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업자 점검(2주간, '19. 8. 19 ~ 30)

* 점검업종(8종) : (허가) 동물생산업, (등록) 동물판매업·수입업·장묘업·전시업·위탁업·미용업·운송업

○ 영업자의 맹견* 소유 여부 및 의무교육 수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 및 제도 홍보 병행

* 맹견(5종, 잡종 포함) :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볼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서테리어 ④스�테퍼드서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

□ 농림축산식품부(이개호 장관, 이하 '농식품부')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·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*에 대해 특별점검**을 실시한다.

* 반려동물 관련 영업(8종) : (허가) 동물생산업, (등록) 동물판매업, 동물수입업, 동물장묘업, 동물전시업,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

**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이번 점검은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임

○ 농식품부(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)는 지자체(특별사법경찰 포함)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*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
* 서울·경기, 강원·충북, 충남·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
□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공통 점검 사항>

- 영업자의 허가·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, 영업장 내 허가(등록)증·요금표 게시, 개체관리카드 작성·비치, 급·배수 시설 설치, 인력기준* 준수 여부 등

* (생산업) 75마리/명, (판매·수입업) 50마리/명, (전시·위탁업) 20마리/명

<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>

- (동물생산업) 사육시설 기준, 사육·분만·격리실 구분 설치,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
- (동물판매업)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,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, 판매 월령(개·고양이 2개월) 및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
- (기타 영업)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* 기한 준수(장묘업), CCTV 설치·영상 보관 여부(장묘·위탁업), 전시동물의 월령(6개월)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(전시업), 소독·고정 장치 설치 여부(미용업) 등

*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화장 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함

□ 이번 점검 결과, 무허가(무등록)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「동물보호법」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, 허가(등록) 업체가 시설·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.

* 무허가(무등록) 업체는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

- 참고로, 지난 4.25~5.24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「동물보호법」 위반으로 고발 13건,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.

□ 아울러,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*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**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.

*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(猛犬)의 종류 :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
** 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”고 하며,

○ 금번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「동물보호법」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,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,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,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참고**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**

□ 무허가(무등록) 영업자

: (벌칙)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제2항제2호

제46조(벌칙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

□ 영업 시설·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

: (행정처분) 영업정지 7일 ~ 1개월

○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1(행정처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라.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4호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바.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6호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